

함양군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서

함양군 식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함양군 · 농협중앙회 · 함양군 관내 지역농협 · 용추농업회사법인 · 쌀전업농함양군연합회은 함양군 식량 산업종합계획(2020~2024)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.

- 협약사항 -

제1조[기본방향] 본 협약은 함양군 식량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통해 지역 식량작물의 경쟁력 함양과 지역 내 생산/유통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[식량산업 발전협의회]

- ① 함양군 식량산업의 발전을 위해 주요 주체들이 참여하는 식량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축한다.
- ② 식량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은 행정, 지역농협, 농협중앙회, 민간 RPC 및 주요 생산주체 등으로 구성한다.
- ③ 식량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승인, 총괄관리 등을 담당한다.
- ④ 식량산업발전협의회는 산하에 참여주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획, 실행, 모니터링의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.

제3조[주요 협력사항]

- ① 참여 주체들은 함양군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식량산업종합계획 내용에 따라 사업참여, 자료 및 정보 제공, 협약사항 준수 등을 적극 협조한다.
- ② 지역 내 식량산업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체들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
- ③ 지역 내 균형있는 식량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설활용 및 연계, 주체별 참여방안, 지역 내 식량산업 관련 주요 이슈 발생 시 식량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제4조 [협약의 시행 및 준수]

- ①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시행하며, 참여조직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한다.
②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식량산업발전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의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.

2019. 11. 13.

함 양 군 수

서춘수(서명)

농협중앙회함양군지부장

노기창(서명)

함양농업협동조합장

강시우(서명)

마천농업협동조합장

조숙자(서명)

수동농업협동조합장

임종식(서명)

지곡농업협동조합장

노병록(서명)

안의농업협동조합장

이상인(서명)

용추농업회사법인 대표

양기운(서명)

쌀전업농함양군연합회장

김기원(서명)